

명곡의과학연구소 규정(4-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명곡의과학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함)이라 칭하며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를 수행하여 생명과학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
2.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 연구
3. 국내외 공동연구
4.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비 관리
5.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및 경비지원
6. 간행물 발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원

제4조 (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실험연구부, 연구지원부
3. 융합연구센터(신설 2017.11.1.)

제5조 (임원)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
2.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함)
3. 융합연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함) (신설 2017.11.1.)
4. 운영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함) 및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제6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 :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센터장 :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11.1.)
4. 간사 및 위원 : 위원 및 간사는 건양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책무) 임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융합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융합연구센터에서 담당한다.(신설 2017.11.1.)

제9조 (부원의 임명) 제4조 제2호의 실험연구부와 연구지원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원을 둘 수 있다.

1. 의학과 전임교원
2. 연구교수
3. 연구원
4. 연구조교
5. 직원

제10조 (고문의 선임) 고문은 의과학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로서 필요시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한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
2.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
3.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명곡학술연구비의 선정 및 관리
5.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의 지원금
2. 연구기금 및 연구사업 수익금
3. 외부기관의 지원금
4. 기타 수입

제1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 결과 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건양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5 장 규정 개정과 준용

제18조(준용)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규정 개정) 연구소의 규정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규정개정)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